

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587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9년 3월 29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(“제로페이”)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게 한시적으로 서울상상나라 입장료를 감면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서울상상나라 입장료를 결제하는 자에 대하여 100분의 3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음(안 제6조제2항)
- 나.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입장료 감면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함(안 부칙 제2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등
- 나. 예산조치: 협의완료

다. 기 타

(1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도 첨부

(2) 입법예고(2019. 2. 21. ~ 3. 13.) 결과: 의견없음

(3)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: 별도 첨부

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제목 외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(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)으로 서울상상나라 입장료를 납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3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입장료를 경감할 수 있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) 제6조제2항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까지 효력을 가진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입장료의 감면)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6조(입장료의 감면) ① (현행 제6조 제목 외 부분과 같음)</p> <p>② <u>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(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)으로 서울상상나라 입장료를 납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3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입장료를 경감할 수 있다.</u></p>

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상상나라 이용자의 제로페이 결제 시 입장료 감면 혜택 부여로 인한 시설의 손해 발생 및 감면에 따른 손실 보전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·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손해 발생 보전액이 37백만원으로 예상되어, “한시적인 경비로서 10억원 미만인 경우”에 해당됨

- 산출내역: 615백만원¹⁾×30%(이용률)×20%(할인율)=37백만원

4. 작성자

서울특별시 보육담당관 추 인 순 (02-2133-5113)

1) '19년 5월~12월 서울상상나라 입장객 수입 예상액임